

제209회 임시회
2003. 2. 14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◦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
심 사 결 과 보 고

1. 외부조례안

-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월 30일(충청북도교육감)

나. 외부일자 : 2003년 2월 3일

다. 상정일자 : 2003년 2월 12일(제209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)

3. 제안설명요지

-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- 2003년도, 소규모학교 통·폐합계획에 의거
 - 보은, 동광초등학교 학림분교장과
 - 동 분교의 병설유치원이, 2003년 3월 1일, 각각 폐지됨에 따라,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임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조례의 개정안은, 자연인구 감소로 인한,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폐지하여,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, 학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, 적절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됨.
- 그러나, 동 분교장과 병설유치원이 폐지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, 기존 학생들의 인근편입학교로의 통학대책 등에 대하여는,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관 련 부 서 : 기획관리과

□ 개정사유

2003학년도 소규모학교 통·폐합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당초계획에 없었던 보은동광초등학교 학림분교장이 2003. 3. 1자로 폐지되어 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함.

□ 주요골자

- 2003. 3. 1일 폐지되는 동광초등학교학림분교장을 삭제함 (별표4).
- 2003. 3. 1일 폐지되는 동광초등학교학림분교장병설유지원을 삭제함(별표6).

□ 개정근거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

□ 조 례 안 : 불 임

□ 참고사항

- 소규모학교 통·폐합 : 분교장 및 병설유치원 폐지(1교, 1개원)

학 교 명	위	지	폐지년월일	폐지사유
동광초등학교 학림분교장	충북 보은군 보은읍	중동리 9-1	2003. 3. 1	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
동광초등학교 학림분교장 병설유치원		"	"	분교장폐지

※ 행정예고결과 이견없음

□ 덧 붙 임 : 신·구 조문대조표, 관계법령 발췌서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중 동광초등학교학림분교장란을 삭제한다.

별표 6중 동광초등학교학림분교장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서

교육기본법

제11조(학교 등의 설립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·경영한다.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34조(교육기관의 설치) ①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